

인천지방법원 2021. 3. 17 선고 2020가단246691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, 유병연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선정

피 고 B

소송대리인 C

변론 종결 2021. 2. 24

판결 선고 2021. 3. 17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/9지분에 관하여, C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18. 11. 20.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, 피고는 C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의 c에 대한 채권

원고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소460020호로 C을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 하는 소를 제기하였다.

위 법원은 C에 대한 소장 부분이 송달되지 않자 공시송달의 방 법으로 C에게 소장 부분과 기일통지서 등을 송달한 후 2015 . 12. 9. ' C은 원고에게 8,179,458원과 그 중 5,921,658원에 대하여 2015. 6. 19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.9%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'는 판결을 선고하였고, 위 판결은 공시송달의 방법으 로 2015. 12. 16. C에게 송달되어 2015. 12. 30. 그대로 확정되었다.

나.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로

1) 피고는 망 D의 배우자로, 그 사이에 자녀로 E, C, F가 있다.

2) 망 D은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(이하 '이 사건 아파트'라 한다)에 관하여 1995. 7. 1. 매매를 원인으로 1995. 8. 4.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3) 망 D은 2018 . 10. 27. 사망하였고, 2018 . 12. 14.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8. 10. 2.자 협의분할(이하 '이 사건 협의분할'이라 한다)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내지 8호증(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 함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의 주장

C은 무자력 상태에서 이 사건 협의분할을 통해 이 사건 아파트 중 자신의 상속분 에해당하는 2/9지분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였는바, 이는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. 따라서 이 사건 협의분할 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, 원상 회복으로 진정한 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.

3. 판단

가.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이 이 사건 협의분할 이전에 이미 발생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, 이는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.

또한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 전산정보센터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의하면 C은 이 사건 협의분할 무렵다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, 이 망 D의 사망에 따라 유일하게 보유하게 된 이 사건 아파트 중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2/9지분을 이 사건 협의분할에 따라 피고에게 이전하여 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담보의 감소를 가져오는 사해행위에 해당 하고, C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(대법원 2009. 5. 14. 선고 2008다84458판결 등 참조).

나.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 라는 취지로 항변한다.

살피건대, 위 각 증거와 을 제1,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피고는 망 D과 장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 망 D이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무렵 인 1995. 5. 13.부터 망 D의 사망 이후 현재까지도 약 25년 이상 계속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, 망 D과 피고의 아들인 C은 성년이 된 이후 2003. 3. 13. 이 사건 아파트에서 전출하였다가 2009. 6. 26. 이 사건 아파트로 전입하였고, 2012. 8. 10. 다시 이 사건 아파트에서 전출한 후 망인이 사망한 이후인 2019. 7. 19.에야 이 사건 아파트로 전입한 사실, C은 공시송달로 송달된 위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의 존재를 실제로 인식한 후 2019. 5. 28. G에 채무조정신청을 하여 그 조정된 채무를 분할 변제 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.

여기에 망 D이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기는 하였으나, 망 D과 피고의 혼인 기간, 이 사건 아파트에의 거주기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아파트의 유지·관리에는 피고 또 한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, 부부가 어떤 집에서 장기간 함께 거주하 던 중 일방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는 경우 자녀들이 남은 배우자에게 상속재산 협의분 할 형식으로 자신의 지분을 이전하고 그 집에 계속 거주하도록 하는 것은 경험칙상 흔 한 일이고 사회의 도덕관념에도 부합하며,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들로서는 그러한 행위가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자녀 중 한 명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고 쉽게

인식하기 어려운 점, 피고는 1952년생으로 이 사건 협의분할 당시 이 미 67세의 고령이었고, C은 1970년생으로 오랜 기간 피고나 망 D와 독립된 경제생활 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,원고의 C에 대한 채권액이 매우 크지는 않고,피고와 망 D이 함께 거주하여 온 이 사건 아파트 이외에 망 D에게 다른 상속재산이 존재한다거 나 이 다른 재산에 관한 상속분까지 피고에게 이전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, C뿐만 아니라 피고와 망 D의 다른 자녀들도 이 사건 협의분할에 동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피고 명의 단독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점을 더하여 고려하면,피고 가이 사건 아파트 중 2/9지분의 취득으로 인하여 원고를 비롯한 C의 채권자들을 해 할 것을 알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,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할 것이다.

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4. 결론

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.

판사 강인혜

별지